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5호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 다.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안전망 구축(안 제6조~제7조)
- 라. 아동의 참여 보장과 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안 제8조~제9조)
- 마.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및 권리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제11조)

바. 아동의 실태조사와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안 제12조~제13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및 포상(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은 보육·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 보장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 · 여가 · 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 · 여가 ·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 · 생활 · 교육 · 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단체 및 아동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락처 :

제 ·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